나의 민원 인쇄하기

*인쇄 페이지 열람 시 인쇄 이력이 기록됩니다.

인쇄자 : 구대근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901-371793	신청일	2019-01-21 09:28:03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구대근		
연락처		휴대전화	010-6286-7339
주소	[063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6길 9, 41-212		
진행상황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전자우편	cadserv@nate.com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도로의 위치와 용도, 규모 10%미만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인지
민원내용보기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위한 법령개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정비구역지정된 정비계획시 도시계획도로(단지내 관통도로)를 시구의 요구로 계획하였는데요

사업시행인가시 관한 경찰청의 요청으로 외곽도로의 확장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의 위치나 용도, 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위치와 규모 10%미만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인지

2. 기본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단지내도로(공공보행통로, 보행자중심로 등)의 도로의 용도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되는지요?

3.
기존의 24M 폭의 도시계획도로 16M가량으로 도로의 면적을 줄이는 경우에
전체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규모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되는지요?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건축위원회, 도시공동통합심의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의 변경은 법에 정한 심의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볼수 있는지요?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공동통합심의에 따른 의 위치, 용도, 규모의 변경은 법에 정한 심의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볼수 있는지요?

6. 도로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최고높이, 용적률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	이호성 (044-201-3393)		
접수일	2019-01-21 10:07:2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1-404787
답변일	2019-01-24 10:52:38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위치와 규모 10%미만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인지 2. 답변내용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며, 도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위치와 규모 10%미만의 변경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규정 제13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지정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2019.0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불만>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중 10호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지요?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2

	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답변일(추가)	2019-02-12 18:54:11
답변내용(추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첨부파일(추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인쇄